

PARIS BAGUETTE

[등록번호 : 20080200064]

[최초등록 : 2008.07.29.]

[최종등록 : 2025.11.26.]

www.paris.co.kr

[파리바게뜨]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2022,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상대원동)
서울(양재)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양재동)
대표전화 : 031)740-5500 / 02)2276-6000
대표FAX : 031)740-5520 / 050)5076-0144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법무팀 02)2276-6079

목 차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6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2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3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32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54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56
VIII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58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61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우리 회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외 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상대원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86.10.17	1987.01.15	경제형	02-2276-6000	050-5073-0144
	법인등록번호	110111-0508311	사업자등록번호	129-81-07244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영업표지는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입니다.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우리 회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사업(경영)기간	주소
대표이사	경제형	파리바게뜨 외 1*	1986.10.17. ~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상대원동)
사내이사	조병훈			
사내이사	박문수			
사내이사	유승환			
감사	이건열			
계열회사 (대표자)	(주)에스피씨 삼립 (황종현, 김범수)	빛은	2006.2~현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 (정왕동) (대표전화번호: 080-739-8572)
		따삐오베이커리	1996.4.~현재	
		르뽀미에	2007.4~현재	
계열회사 (대표자)	비알코리아(주) (도세호)	배스킨라빈스	1987.3.15.~현재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955-25 (대표전화번호: 080-555-3131)
		던킨도너츠	1995.1.15.~현재	
계열회사 (대표자)	(주)빅바이트 컴퍼니 (이광, 김준수)	잠바주스	2024.9.~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상대원동)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영업표지는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입니다.

* 파리바게뜨 외 영업표지

: 파리크라상, 파스쿠찌, 리나스, PASSION5, 퀸스파크, 라그릴리아, 스트릿 등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우리 회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가맹관련사업 일부를 다른기업에 양도함	주식회사 빅바이트컴퍼니	잠바주스	2024.09.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상대원동)	이광, 김준수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파리바게뜨]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파리바게뜨	-
상 호	파리바게뜨 OO점	-
상표 (서비스표)	PARIS BAGUETTE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0869650000
광 고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등)를 통한 다양한 광고 홍보 활동 및 PROMOTION 실행	-
그 밖의 영업표지	 PARIS BAGUETTE	-

파리바게뜨는 1988년 직영 1호 광화문점과 가맹 1호 무역센터점의 개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7여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순수 국내 베이커리 브랜드로써, 10년 연속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수상’, K-BPI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수상,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 수상 등 각종 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습니다. 2004년부터는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2019년 말 미국,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에 점포 수를 늘려나가고 있으며, 중국 최고급 제과점 명성점을 수상하고 AAA‘브랜드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시장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우리 회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701,368,163	980,241,188	721,126,975	1,984,740,447	18,799,944	3,179,667
2023년	1,774,635,621	1,045,084,613	729,551,008	2,008,359,930	19,881,706	7,849,062
2024년	1,772,745,505	993,751,798	778,993,707	1,930,706,299	22,336,201	31,947,085

* 부가세 미포함

2) 우리 회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우리 회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경재형	대표이사	2022.1.~2023.11	(주)에스피씨 삼립 부사장	영업
			2023.11.~2024.12.	(주)에스피씨 삼립 부사장	푸드사업 총괄
			2024.12.~2025.01.	(주)에스피씨 부사장	정도경영
			2025.01.~현재	(주)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사업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유승환	사내이사	2021.1.~2023.2.	에스피씨(주) 상무	마케팅
			2023.2.~2023.3.	에스피씨(주) 전무	
			2023.3.~2024.10.	(주)파리크라상 전무	
			2024.10.~현재	(주)파리크라상 전무	중국사업
	조병훈	사내이사	2021.1.~2023.1.	(주)에스피씨 삼립 상무	경영전략
			2023.02.~2024.05.	(주)에스피씨 삼립 전무	
			2024.5.~현재	(주)파리크라상 전무	재경
	박문수	사내이사	2021.1.~2021.11.	(주)파리크라상 부장	경영기획
			2021.11.~2023.2.	(주)파리크라상 상무	
			2023.2.~현재	(주)파리크라상 전무	
	이건열	감사	2021.1.~2023.2.	(주)에스피씨지에프에스 부장	경영관리
			2023.2.~현재	(주)에스피씨지에프에스 상무보	

*기재 기간: 최근 3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우리 회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등기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5	-	5,775

* 2024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준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우리 회사 및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파리바게뜨]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본부	주식회사 파리크라상	CAFE	2003.11.5~현재	파스쿠찌(커피전문점)	20090100251

계열회사	비알코리아(주)	아이스크림 도너츠	1987.3.15~현재	배스킨라빈스(아이스크림/빙수)	20080500015
				던킨도너츠(제과제빵)	20080500016
계열회사	(주)에스피씨 삼립	유사업종 등	2003.11.15~현재	파페오베이커리(제과제빵)	20080200109
				르뽀미에(제과제빵)	20080200110
				빛은(한식-떡류, 한과류)	20080200076
계열회사	(주)빅바이트 캠퍼니	스무디	2024.09.~현재	잡바주스(스무디/음료)	20140694

PARIS
CROISSANT

파리크라상 카페 (베이커리)
파리크라상 키친 (외식업)



OCS (커피전문점)

strEAT

스트릿 (아시아 누들
&라이스 전문점)



퀸즈파크
(영국풍 자연주의 레스토랑)



베라피자 (피자 레스토랑)

LINA'S
SANDWICH CAFÉ

리나스 (샌드위치 전문점)

poussin5

패션5 (디저트 갤러리)



라그릴리아
(이탈리안 레스토랑)

COFFEE@WORKS

커피앳웍스
(커피전문점)

Latelier

라뜰리에 (경양식 레스토랑)

또한 우리 회사가 경영하는 가맹사업 외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리크라상 키친, 라그릴리아, 스트릿, 퀸즈파크, 베라피자, 라뜰리에는 외식업종에 해당합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우리 회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파리바게뜨 상표권	우리 회사 등록 상표 및 서비스표 사용권	2001.8.24. 출원 2003.1.2. 등록	출원 제4020010037422호 * 원출원번호임. 등록 제4005384800000호	(주)파리크라상	2033.1.2.
파리바게뜨 서비스표권		2001.8.23 출원 2003.6.3. 등록	출원 제4120010016309호 * 원출원번호임. 등록 제4100869650000호		

* 상기 지식재산권은 귀하가 가맹점사업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며, 그

외에 귀하는 “파리바게뜨, PARIS BAGUETTE” 등이 포함된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 가맹계약 목적범위 내에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우리 회사의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현황

1.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1988년 9월 30일 (직영점 시작: 1988년 6월 23일)

2. 파리바게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이성일	1988.09.30. ~ 1989.12.1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최승희	1989.12.11. ~ 1993.03.26.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윤석하	1993.03.26. ~ 1997.07.22.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김영덕	1997.07.23. ~ 2001.06.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김영덕,조상호	2001.06.19. ~ 2003.02.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조상호,성완석	2003.02.03. ~ 2003.09.18.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성완석	2003.09.19. ~ 2003.12.3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조상호	2003.12.31. ~ 2008.09.0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최석원	2008.09.01. ~ 2013.03.28.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정태수	2013.03.28. ~ 2014.05.3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조상호	2014.05.30. ~ 2014.09.25.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조상호,권인태	2014.09.26. ~ 2016.11.0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최석원	2016.11.01. ~ 2017.09.1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최석원,권인태	2017.09.15. ~ 2018.03.30.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권인태	2018.03.31. ~ 2019.03.25.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권인태,황재복	2019.03.26. ~ 2019.10.3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황재복	2019.11.01. ~ 2021.03.07.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황재복,이명숙	2021.03.08. ~ 2023.02.22.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황재복	2023.02.23. ~ 2024.04.04.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황재복,김성한	2024.04.05. ~ 2024.10.31.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김성한	2024.11.01. ~ 2025.01.0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주)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경재형	2025.01.10. ~ 현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3. [파리바게뜨] 업종

영업표지	업종	
파리바게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제과, 제빵	빵, 케익,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디저트, 음료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파리바게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446	3,419	27	3,415	3,389	26	3,351	3,327	25
서울	669	659	10	645	636	9	627	619	8
부산	200	197	3	198	196	2	186	185	2
대구	163	163	0	164	164	0	159	159	0
인천	212	207	5	217	212	5	210	206	4
광주	107	107	0	101	101	0	98	98	0
대전	101	101	0	100	100	0	100	100	0
울산	74	74	0	74	74	0	73	73	0
경기	922	917	5	922	916	6	907	901	6
강원	104	103	1	103	102	1	103	102	1
충북	118	118	0	116	116	0	114	114	0
충남	136	136	0	139	139	0	142	142	0
전북	120	120	0	115	115	0	115	115	0
전남	114	114	0	111	111	0	109	109	0
경북	141	141	0	143	143	0	143	143	0
경남	189	189	0	189	189	0	188	188	0
제주	52	49	3	52	49	3	53	49	4
세종	24	24	0	26	26	0	24	24	0

5. 최근 3년간 [파리바게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3,402	76	0	59	233	3,419
2023	3,419	56	0	86	217	3,389
2024	3,389	52	25	89	237	3,327

* 신규개점은 가맹점 오픈일 기준

귀하가 개설하고자 하는 희망 지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 위치 등의 현황, 정보는 파리바게뜨 홈페이지(www.paris.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파리바게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파리바게뜨]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 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파리크라상	파스쿠찌	2009 0100251	휴게음식점	494/27	477/32	460/25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비알코리아(주)	배스킨라빈스	2008 0500015	휴게음식점	1,653/67	1,687/65	1,706/41
		던킨도너츠	2008 0500016	제과점	633/74	631/59	616/45
	(주)에스피씨 삼립	빛은	2008 0200076	떡	44/6	35/5	31/4
		띠삐오베이커리	2008 0200109	제과점	47/0	42/0	29/0
		르뽀미에	2008 0200110	제과점	2/2	2/2	1/1
	(주)빅바이트 컴퍼니	잠바주스	2014 0964	휴게음식점	8/22	8/21	12/19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파리바게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제외 점포수	
		연간 평균매출액		연간 평균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매출액 하한			
		평균매출액	면적 3.3m ² 당	평균매출액	면적 3.3m ² 당	평균매출액	면적 3.3m ² 당		
전체	3,327	705,571	26,024	2,853,956	111,457	56,207	4,164	28	
서울	619	793,422	30,363	2,294,351	87,648	117,175	8,666	8	
부산	185	659,598	22,694	1,821,960	64,578	201,236	7,938	1	
대구	159	569,032	22,412	1,403,482	63,480	204,263	6,652	0	
인천	206	723,626	27,211	2,482,562	103,440	200,593	8,125	2	
광주	98	596,227	22,977	1,259,426	58,030	244,834	5,599	0	
대전	100	609,409	22,213	1,529,663	45,986	221,509	8,860	1	
울산	73	603,348	19,948	1,189,517	36,512	192,422	4,811	0	
경기	901	734,433	28,166	2,194,903	111,457	56,207	4,446	9	
강원	102	690,045	26,661	1,379,807	70,777	248,258	7,838	0	
충북	114	652,124	21,938	1,402,915	73,348	282,244	4,807	1	

충남	142	733,247	26,314	1,570,279	89,176	116,584	4,164	1
전북	115	628,469	21,697	1,295,902	54,939	197,510	5,640	0
전남	109	651,532	22,172	1,438,700	57,548	198,557	6,847	0
경북	143	716,078	25,014	1,832,271	79,243	305,274	9,339	1
경남	188	640,505	22,530	1,682,979	69,991	248,044	8,871	4
제주	49	791,688	25,914	2,853,956	77,134	331,472	10,861	0
세종	24	684,678	23,954	1,069,126	39,320	295,873	10,203	0

* 운영일 180일 미만 점포는 산정제외함.

* 우리 회사는 [공장도 가격 X 1.73]의 산식에 따라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실제 운영일수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으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분석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내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의 유형별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기재된 추정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회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우리 회사의 본사 및 영업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파리바게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4	3,327	3,254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우리 회사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사무소는 가맹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맹본부에 소속된 일정 인원이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형태로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 지역본부’ 및 ‘가맹중개인’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2025.3.17.기준

본부	팀	주소	전화번호	관리 점포 수
1사업부	서울남부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양재동) 강남P타워	02-2276-6313	122
	서울남동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양재동) 강남P타워	02-2276-6313	130
	서울서부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양재동) 강남P타워	02-2276-6313	136
	경기안양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천천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5층	031-269-8240	128
	경기화성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천천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5층	031-269-8240	137
	용인강원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천천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5층	031-269-8240	155
	수원안산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천천동) 근로자 종합복지관 5층	031-269-8240	133
2사업부	서울중부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양재동) 강남P타워	02-2276-6313	144
	서울북부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114 (공릉동) 무궁화빌딩 4층	02-2213-9970	157
	서울동북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114 (공릉동) 무궁화빌딩 4층	02-2213-9970	164
	서울일산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114 (공릉동) 무궁화빌딩 4층	02-2213-9970	148
	인천김포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삼산동) 5층	032-652-9516	141
	부천인천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삼산동) 5층	032-652-9516	140
	제주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19 (노형동) 우상빌딩 4층 401호	064-745-0451	49
3사업부	대전충북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95 (만년동) 리더스타운 C동 7층	042-471-8234	190
	대전충남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95 (만년동) 리더스타운 C동 7층	042-471-8234	193
	광주전남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 (치평동) 동양빌딩 17층	062-381-8201	159
	광주전북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 (치평동) 동양빌딩 17층	062-381-8201	160
4사업부	대구포항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8 (범어동) 삼희빌딩 15층	053-219-8200	188
	대구구미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88 (범어동) 삼희빌딩 15층	053-219-8200	192
	부산경남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14층 16호 (범일동, 놀원빌딩)	051-636-0853	184
	부산양산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14층 16호 (범일동, 놀원빌딩)	051-636-0853	185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우리 회사에서 2024년에 파리바게뜨(직영점포함)와 관련하여 광고선전비로 118,155,659천원 및 판매촉진비로 26,888,63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부가세 미포함).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51]쪽을 참고하십시오.

* 가맹본부가 부담한 광고비 및 판촉비에는 다른 브랜드/사업 등에 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1599-1114 (에스크로 대표번호)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우리 회사가 하나은행 에스크로 홈페이지(www.hanaescrow.com)에 가맹점 사업자를 사전등록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위 홈페이지의 "조회센터"→B2B→프랜차이즈B2B에서 에스크로에 가입하고, 가맹금을 입금합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우리 회사와 우리 회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설비 등의 종류 및 규모, 점포의 구조 및 노후도 등 내외부 특성,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개점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이하 설명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이하 설명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이하 설명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변동금액/이하 설명
설비, 오픈비용 등 기타 비용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이하 설명

1)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부가세별도)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개점비	10,000	체결 즉시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3,000	체결 즉시			
교육비	입문교육	체결 즉시	이하 설명	이하 설명	이하 설명
	위생클리닉	체결 즉시			
	OC, BC 교육	체결 즉시 (대상점에 한함)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 20,000 (VAT 대상 아님)	체결 즉시			

* 가맹점 개설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0,000천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① 개점비

귀하는 우리 회사로부터 가맹점 개설 전 및 초기에 물품, 인력, 판촉, 홍보, 신규반품, 초기 운영매뉴얼 등을 지원 및 제공받는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개점비를 지급 하

여야 합니다.

개점비는 가맹점 개설 전 및 초기에 위의 지원 및 제공의 대가로 모두 소모됩니다.

②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우리 회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있는 도면설계 등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상표권(CI)과 고유브랜드 디자인 매뉴얼 사용을 가맹점 운영자(계약자)에게 허용하며, 이와 관련된 적용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를 지급하여하며, 가맹점 운영 중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③ 교육비

귀하 및 그 종업원(귀하를 포함한 과정별 기준인원 준수)은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본부의 교육계획에 따라 입문교육 및 위생클리닉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시 교육비(강사료 및 시설사용료 등)를 우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의 요청에 따른 수강신청인원이 과정별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직접제조(OC:Owner chef)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BC:Baking chef) 제조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교육과정이 변동되는 경우 교육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안내 후 진행됩니다.)

교육을 받는 도중에 중단하게 될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잔여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VIII. 교육·훈련에 관한 부분 참조)

④ 계약이행보증금

귀하는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우리 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예탁(무이자)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계약 만료 전의 매입대금 또는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점포 이전 또는 확장) 시 매입대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기간 중 매출 활성화로 인하여 1개월 기준 일평균 매입대금의 5일간 합산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8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현

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리 회사와 귀하의 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품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등 우리 회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이 반환되게 됩니다.

※ 임차형 매장

우리 회사는 개별적인 모집절차를 통해 임차료 등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임차형 매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시설 및 임대 차 등에 대한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등 별도 개설조건에 따라 개설됩니다.

임차형 형태의 매장의 경우에는 가맹계약기간이 점포임대차 계약기간 등 여건에 따라 일반적인 가맹점의 경우와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가맹본부로부터 매장 내 CCTV의 설치의무 부과, 영업지도 및 감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합계	25,900 ~ 38,400
개점비	10,000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3,000
교육비	2,900~5,4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 ~ 20,000(VAT 대상 아님)

※ 일반적인 예치가맹금 반환 사유 및 그 범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가맹금을 수령(예치기관에 예치한 경우 및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포함)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물품의 품목은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9.17m²(30평형)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가맹본부 등	198,600~242,200	6,620~8,073		반환되지 않음 (영업을위해 소요된실제 비용)	총비용/3.3m ²
최초공급	가맹본부	13,500	-	영업개시 후		제품등초도물량 (오픈 1일전까지 출하분 기준)
디자인설계 매뉴얼비	가맹본부	3,000				
인테리어	공급업체	70,000~81,000	2,333~2,700	오픈 2일 전		
장비	공급업체 등	82,000~100,000	-			
간판	공급업체	8,000 ~10,000	-			
가구	공급업체	16,000 ~ 20,000	-			기본사양(1면)
POS	공급업체	2,100 ~ 2,700	-	오픈 2일 전		의탁자 별도
부대설비	공급업체	4,000 ~ 12,000	-	오픈 2일 전		전기증설 등

* 파사드 1면(7M 기준) 추가시 추가비용 발생

* 소방설비, 용도변경, 데크, 정화조 등 기타공사 필요시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형 매장]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가맹본부	82,900 ~92,900	해당없음	별도 약정	-		
개점비/ 교육비	가맹본부	12,900	-	-	반환되지 않음	영업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최초공급	가맹본부	13,500	-	영업개시 후		제품 등 초도물량 (오픈 1일전까지 출하분 기준)	
보증금	가맹본부	60,000 ~70,000	-	-	계약종료 시	계약이행보증금 시설등임대차보증금	

* 임차형 매장은 점포, 시설 등을 임차하는 형태로, 가맹본부에서 임차형으로 개설하기로 결정한 매장이 있을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점포만 임차 또는 전차 받는 경우에는 위 『일반형』 또는 『카페형』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로 점포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금액 외에 오픈행사를 진행할 경우 별도 실비(500만원 이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의 금액은 우리 회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평균비용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우리 회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협의 선정)	담당자 배정 → 상담 및 가맹희망자 희망 개설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 입지 도출/협의 → 가맹희망자 최종결정 ※ 실면적 82.5m ² 이상, 전면 7M이상, 최적 상권입지 여부

* 상권 및 점포특성 등에 따라 기준면적 이하의 점포도 오픈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주체]

우리 회사는 자체조사 또는 가맹희망자의 의뢰에 따라, 아래 선정기준에 의하여 가맹점 개설입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영업지역의 범위, 개설위치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합니다.

[선정기준]

우리 회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상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적인 위치선정	지역상권	서울, 대전,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 범위
	지구상권	영등포구, 성북구, 강남구 등과 같이 중규모 범위
	지점상권	여의도동, 돈암동, 압구정동 등과 같이 소규모 범위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1. 지점 및 지구내의 충분한 잠재고객이 있는가? (배후지 세력 참고) 2. 동업종의 분포 현황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3. 해당 지점내의 고객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4. 거리, 교통, 주차장 등의 접근의 용이성은 어떠한가? 5. 상품 매입이나 기술의 구입은 용이한가? 6. 창업자의 생활환경(자녀의 학교 문제, 교통 등)에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7. 후보지로부터 도보 500M이내에 중소제과점이 있는가?	
위치선정시 확인사항	통행량	유동인구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함.
	주변상가분석	1차 상권 내의 주변상가가 발전이 계속 되는 곳인지 아니면 쇠퇴기에 접어든 곳인지 면밀히 분석
	접근성	고객의 흡인이 용이하도록 점포의 입구나 건널목상태, 고객 주요 유동 방향 등을 확인
	시계성	눈에 잘 띠는 장소인가여부 확인
	연출성	입주 예정 점포의 과거 영업을 판단, 응용하여 상권내의 특색있는 점포 이미지를 연출
점포조사	점포를 계약하기 전,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여부, 도시계획 여부, 점포 건물의 노후정도 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위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담은 점포 조사표를 작성함	

5)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며, 제조, 판매 등 점포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고용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① 점포에서 근무할 종업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입문교육 및 서비스 보수과정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입문교육은 직무이론, 점포실습, 제조실습으로 구분되며, 개점일 전까지 귀하 또는 그 종업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은 교육 수료 이후로 연기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계약서 작성 등 고용 및 근로관계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

분 등을 받거나 우리 회사의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맹계약의 개신,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 ④ 귀하의 BM/BC 등 고용인원은 귀하의 책임과 선택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고,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관련 용역제공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점포 내에서의 제조, 근로 등과 관련된 책임 역시 귀하에게 있으므로, BM/BC 등이 표준제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내에서 올바른 근로환경을 조성, 유지하여야 하고, 그 고용인원과 가맹본부 및 협력업체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요구나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가맹점 내에서 적절한 존칭을 사용하고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에서 권장하는 호칭은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항목	권장호칭
가맹점사업자	점주님/가맹대표님
수퍼바이저	이름/직급+님
가맹점 판매 직원	이름/매니저+님
BM/CM/BC	기사님
기타	이름/직급+님

6)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7) 당사는 가맹금 분할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신규 개점 또는 시설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합의 하에 장비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환경개선 비용 (인테리어공사)	공급업체	2,333~2,700 /3.3m ²	개별계약에 따름			하단 설명
음원 사용료	공급업체	6.5/월(셋톱 미이용) 9/월(셋톱 이용)	매월 대금청구시			선택 사항
상표사용료	-	해당없음	-			-
광고료	가맹본부	별도설명	-			50p.
리스료	-	해당없음	-			-
제휴카드 등	카드업체	-	-			하단 설명
해피포인트카드	가맹본부	별도설명	별도설명			하단 설명
상품권	가맹본부	-	-			하단 설명
모바일 교환권	가맹본부	수수료일부	-			하단 설명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 제도	제공업체	별도설명	별도설명			선택 사항
BM 등 용역비	공급업체	별도설명	매월 업체청구시			하단 설명
POS 구매비용	가맹본부	별도설명				하단 설명
점포위생관리비	가맹본부	별도설명	매월 대금청구시			48p.
재고 및 회계처리비용	-	해당없음	-			-
임차료 등	가맹본부	별도설명				하단 설명
물품대금 등	가맹본부	별도설명	별도 설명			하단 설명

① 환경개선 비용

점포의 노후화(약 5년), 주변 환경 및 시장여건의 변화, 브랜드 전체적인 이미지 혁신 기타 필요한 경우 발생되는 비용으로써 점포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며, 환경개선의 범위와 일정 및 그에 따른 비용 등은 해당 점포의 노후도 및 구조, 환경 등의 여건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지VI. 점포환경개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음원사용료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장 내 사용하는 배경음악(BGM; Background Music)의 종류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불법음원 사용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브랜드이미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BGM 제공 전문업체와의 거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BGM 제공 전문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합법적인 음원 사용료를 매월 BGM 제공 전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음원사용료 수금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음원사용료의 수금업무를 가맹본부가 무상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음원사용료는 물가상승 등 업체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제휴카드 등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증진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등과 제휴 할인 및 적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영에 따른 발생비용의 부담은 각 제휴업체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리 회사 부담	가맹점 부담	정산절차	비고
통신사 할인카드 (SKT, KT, LGU+)		- 사전 공지 비율에 따라 분담	월 단위 정산 - 대금청구서 반영	제휴내용, 제휴조건 등의 변경에 따른 부담을 변경사유 발생시 사전 고지함. 신규 통신사 할인카드 제휴도 동일 기준 적용함.
신용카드 할인제휴 (카드사 비용부담)		- 비율이 사전 공지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가맹본부 50%, 가맹점 사업자 50% 비율로 안분	없음	할인방법은 카드사에서 대금청구서 할인 방식으로 시행됨. 신용카드수수료는 가맹점 부담임.
OK캐쉬백 제휴			월 단위 정산 - 대금청구서 반영	제휴내용, 제휴조건 등의 변경에 따른 부담을 변경사유 발생시 사전 고지함.
기타 제휴 프로모션			월 단위 (또는 행사 종료후) - 대금청구서 반영	기타 제휴프로모션 시행시 프로모션 내용, 부담비율 등을 사전 고지.
분담절차				
제휴계획 공고 → 제휴 시행 → 분담금 정산				

* 가맹본부는 추가적인 제휴를 하거나 제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분담은 가맹본부 50%. 가맹점 사업자 50% 비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해피포인트 카드 제도

가맹본부는 고객들의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고 고정 고객을 확보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증진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피포인트 적립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해피포인트카드 제도의 주요내용

1. 가맹점사업자는 해피포인트 카드회원이 점포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1,000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5% 내에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금액)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야 하고, 회원의 적립 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현금 대신 사용 가능토록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사용된 포인트 전부를 1포인트 당 1원으로 정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적립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으며 구매에 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도 추가로 적립하지 않습니다.
2. 해피포인트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적립금의 50%, 카드비용의 50%, 통신비용을 부담하며, 가맹본부는 적립금의 50%, 카드비용의 50%, 해피포인트카드의 시스템 운영비용(신청서 제작 및 입력비용, 080서비스 운영비용, VAN 사용료 등)을 부담합니다.
3. 적립 부담금 및 포인트 사용금의 정산은 5일 단위로 합니다.
4. 가맹본부는 해피포인트카드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회원약관에 따라 실효된 적립금을 해피포인트 카드 광고선전비 또는 시스템 운영 제반 비용 등 해피포인트카드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5. 가맹본부는 회원 중 기부 희망자의 적립금 중 10%를 활용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활용 내역을 가맹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등 공개된 채널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또한 가맹 본부는 회원에게 공지 후 사회공익활동을 위하여 해피포인트카드 적립금을 현금화하거나 이를 관련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회원에게 해피포인트제도와 기타 할인제도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7. 가맹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의 해피포인트카드 적립금은 가맹본부에게 예치됩니다. 단, 가맹 본부는 폐점일전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사용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의 거래내역 변경에 따라 포인트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작업을 거쳐 처리절차 합의내용에 따라 당월 정산 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9.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해피포인트 카드와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접수 받은 해피포인트카드 신청서의 보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1. 가맹본부는 해피포인트카드의 운영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2. 가맹본부는 해피포인트카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단 기준일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된 게시물 또는 POS 등에 명시된 일자로 합니다.
13. 가맹본부는 본조에 정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해피포인트 가맹점은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잠바주스,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리나스, 빛은 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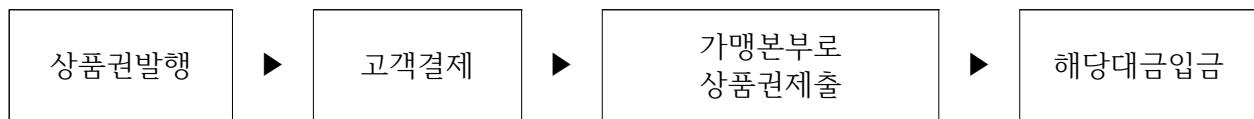
해피포인트 적립은 직접 구매고객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제도이므로, 구매고객이 적립하지 않은 포인트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고용인 등에 의하여 적립될 수 없

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⑤ 상품권, 기프트카드, 모바일 실물교환권

가맹본부는 고객의 결재수단을 다각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진을 도모하는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모바일 실물교환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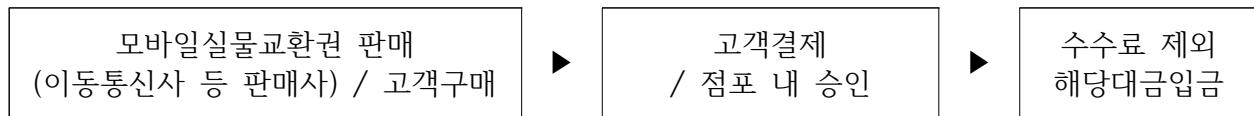
<상품권, 기프트카드>



* 상품권 사용처(변동될 수 있음)

- (ㄱ) 통합상품권 :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잠바주스,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빛은 등
- (ㄴ) 파리크라상 상품권, 기프트카드 :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

<모바일 실물교환권 : 해피콘 등>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입금하는 대금은 액면금액 중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고, 지류 상품권(파리크라상 상품권, 파리바게뜨 상품권), 기프트카드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부분이 없으며, 각 모바일 실물교환권은 가맹점사업자가 수수료 중 POS공지에 따른 비율을 부담합니다.

* 부담비율 및 수수료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시 POS 등으로 고지합니다.

⑥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 제도

가맹본부는 파리바게뜨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파바딜리버리 제도, 파리바게뜨 어플리케이션(앞으로 [파바앱]이라 합니다) 등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앞으로 [플랫폼]이라 합니다)을 직접 또는 제3자(앞으로 [서비스제공자]라고 합니다)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플랫폼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파바앱의 주요내용

1. 파바앱은 고객이 파리바게뜨 브랜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점포에서 판매하는 제품 또는 상품을 예약, 결제, 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파바앱은 고객이 직접 각 가맹점사업자의 재고를 조회하여 제품 또는 상품을 구매할 점포를 선택할 수 있고, 고객이 파바앱을 통하여 파바딜리버리를 이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로 다른 가맹점사업자 또는 직영점의 제품 또는 상품이 배달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제품 또는 상품이 다른 가맹점사업자 또는 직영점의 영업지역에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파바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가입신청 시기(별도 공지)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명의변경 점포는 가맹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파바앱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파바앱을 이용할 수 있고, 취급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른 기준(위생, 규격, 서비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파바앱에 가입한 경우 고객은 점포에서 파바앱 내 통합바코드를 제시하여 제품 또는 상품을 결제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통합바코드 결제에 대하여 결제금액(점포에서 결제되는 판매가 기준)의 0.1%(VAT별도)를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제공자는 파바앱을 통해 결제완료된 주문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이 파바앱을 통해 제품 또는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주문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을 준비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약정에 따라 고객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급품목의 재고를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사업자는 파바앱을 이용하는 고객을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고객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고객이 파바앱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벤트, 할인, 증정 등 각종 프로모션이나 물품구매, 서비스 제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약정기간 내에 파바앱 이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파바앱의 이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 중단에 관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9. 고객은 주문한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바앱을 통해 주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환불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재고부족 등으로 고객의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그 취소사실을 사전에 유선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10. 가맹본부는 파바앱을 이용하여 할인, 제휴, 증정 등의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00% 반품조건 프로모션이나 모바일쿠폰 할인 행사 등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이 없는 프로모션의 경우, 가맹본부는 사전 공지한 후 가맹점사업자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서비스제공자는 파바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시스템상 가맹점사업자의 재고를 사전 주문물량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원하지 않거나 비율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물량 등록의 미적용 또는 등록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는 파바앱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법하게 취득, 보관, 제공,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13.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1년간 서비스의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14. 파바앱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

* 파바딜리버리 제도의 주요내용

1. 파바딜리버리 제도는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주문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이 제품 또는 상품을 주문하면, 고객이 지정한 점포에서 이를 준비하여 픽업 또는 배달 방식으로 고객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파바딜리버리 제도는 고객이 직접 가맹점사업자의 재고를 조회한 후 제품 또는 상품을 구매할 점포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로 다른 가맹점사업자 또는 직영점의 제품 또는 상품이 배달 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제품 또는 상품을 다른 가맹점사업자 또는 직영점의 영업지역에 배달 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파바딜리버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가입신청 시기(별도 공지)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서 배달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배달업체 없음, 라이더 없음 등)에는 서비스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는 파바딜리버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파바딜리버리에서 판매한 상품 “딜리버리 권장 가”의 약정서 내 별도 명시한 채널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제공자는 픽업이나 배달이 완료된 주문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합니다. 위 서비스 수수료에는 배달료 또는 배달관련 결제 수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고객에게 적립할 해피포인트와 유통채널에 지급할 수수료 등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이 주문을 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주문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을 준비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약정에 따라 취급품목의 재고를 확보, 수량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품목만 취급하여야 하고, 제품 또는 상품의 제공 시 전용 패키지를 사용하여 오염 또는 파손으로 인한 고객의 클레임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사업자는 파바딜리버리를 이용하는 고객을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고객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고객이 파바딜리버리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벤트, 할인, 증정 등 각종 프로모션이나 물품구매, 서비스 제공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사업자는 파바딜리버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법하게 취득, 보관, 제공,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9. 가맹점사업자는 재고부족 등으로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서비스제공자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품목 외에는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미 출하된 품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10.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이 배달주문을 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지정하는 배달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배달료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결제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 파바딜리버리에 관한 프로모션이 가맹점사업자가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제공자는 파바딜리버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 시스템상 가맹점사업자의 재고를 사전 주문물량의 50~80% 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사전에 추가물량 등록의 미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파바딜리버리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해지한 경우 또는 약정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1년간 서비스의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서비스운영자는 가맹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전 서면통지 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사업자가 취급품목에 대하여 파리바게뜨 가맹계약서상 기준(위생, 규격, 서비스 등)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② 프로모션 시행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주문, 결제하는 방법을 통해 프로모션 분담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경우
 - 2) 고객으로 하여금 프로모션 기간 중 선결제/외상 결제를 유도하고 기간 종료 후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14. 서비스운영자는 아래의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약정기간 내에 “가입점”이 서비스 이용 중단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가입점”이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파바딜리버리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릅니다.

⑦ 용역부담내역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BM/CM(Baking Manager/Cafe Manager)의 예상 용역비 부담은 2024년 기준 약 4,754천원~6,722천원(BM), 4,865~5,264천원(CM)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와 해당 업체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리바게뜨 제조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는 PB파트너즈 등이 있으나 반드시 위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파리바게뜨의 제품 품질 및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승인 및 가맹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거쳐 가맹점사업자가 직접제조(OC : Owner chef)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BC : Baking chef) 제조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제조업무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월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점포제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원을 요청한 일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POS 장비

가맹점사업자는 제품, 상품 등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POS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POS 장비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유지보수는 무상 A/S기간 이후 청구됩니다.

(단위 : 원/부가세 별도)

항목	비용(VAT별도)	비고
장비	HP POS	구매시로부터 1년간 무상AS (사용자 과실 제외)
	OK POS	
KVS	태블릿	
	거치대	
유지보수 1	18,400/월	부품교체비용 별도
유지보수 2	27,600/월	부품교체비용 포함

(a) POS 장비 기본 구성품목 : POS+영수증프린터+현금보관통

(b) 주변기기 무상대여 : 전자서명패드, 바코드스캐너, 체크단말기

cf. 주변기기는 가맹계약기간 내 무상 A/S적용됨. (단, 사용자 과실 제외)

(c) A/S 및 비용은 별도 선정된 전문업체와 진행/지급됨.

(d)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오픈시 점포개설 담당자 등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⑨ 임차료 등

임차형 매장의 경우, 점포개설 당시 및 계약갱신시 약정한 바에 따라 시설 및 점포 임차료 및 영업관련 수수료(PB-L수수료, 발생매출액 기준 산정)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⑩ 물품대금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등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일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물품 대금 등에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공급마진 등 차액가 맹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의 80% 이상을 미수로 하거나 5일 단위 결산청구 대금을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가맹본부는 POS 등을 통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고 최고 후 5일 이내에 미수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의 80% 미만으로 되지 않거나 지연 미수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사전고지 없이 시정요구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품 등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이러한 물품공급 중단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등의 미수금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로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회사로부터 제품 주문 중단 및 타 가맹점으로부터 원·부재료를 수령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가맹본부는 상기 물품공급 중단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 범위를 보증금 범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⑪ CCTV설치 등

임차형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는 매장의 범죄예방, 위생관리 및 영업지도, 감독을 위하여 매장내에 CCTV 및 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영업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합니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가맹본부는 사전에 제시한 품질·위생기준 등 가맹점운영상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실태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점검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식품위생 관련점검	별지Ⅲ. 식품위생관련 금지행위 및 조치 기준	수시	파리크라상 점포위생안전팀
서비스평가	별지 IV. 참고	수시	직접 또는 제3자 대행
가맹점 경영상태 점검	별지 V. 참고	정기	직접 또는 제3자 대행

- * 각 점검/평가 결과 식품위생 교육 등 보수교육을 유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이 외에도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각종 시정조치, 클레임 등 영업활동 관련 사항을 우리 회사에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의 대가를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의 매입대금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의 증액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금액(단위 천원)
가맹계약 갱신 시	일반점포	계약기간 종료전 1년간 매입대금기준 365,000천원 초과 547,500천원 이하	5,000천원 증액
		계약기간 종료전 1년간 매입대금기준 547,500천원 초과	10,000천원 증액
환경개선 시행 시	환경개선 점포	환경개선 이후 90일간 매입대금기준 90,000천원 초과 135,000천원 이하	5,000천원 증액
		환경개선 이후 90일간 매입대금기준 135,000천원 초과	10,000천원 증액

한편, 이 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활성화, 미수발생 과다, 기타 다른 사유로 1개월 기준 일평균 매입대금의 5일간 합산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8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매입대금 증가액 및 위 증액기준 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개선 시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우리 회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양도 전에 제품대금, 보증금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우리 회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책임과 비용

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우리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우리 회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우리 회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으나, 제품대금, 환경개선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그 잔여분 등을 정산하여야 하며, 사전에 우리 회사에 통지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 및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우리 회사는 양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한편, 귀하는 가맹계약 기간 동안 [파리바게뜨]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우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 상환
- ②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점포 내.외부 영업표지 제거 및 개수 기타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가맹점사업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단, 가맹계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적용된 모든 물품에 대한 사용.제시 금지 및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제거
- ④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 교육자료, 지침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반환
- ⑤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전산시스템 등 가맹본부의 소유물 또는 가맹본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모든 물품 및 비용의 반환

- ⑥ 영업표지의 제거, 물품의 반환·폐기 등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우리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대표적인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파리바게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자재 또는 부자재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별지 VII]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파리바게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명칭	관계	내용	매출액 (VAT별도)
(주)에스피씨삼립	계열회사		(비공개)
호남샤니(주)	계열회사		(비공개)
에스피엘(주)	계열회사		(비공개)
(주)에스피씨지에프에스	계열회사		(비공개)
(주)에스피씨팩	계열회사		(비공개)
(주)섹타나인	계열회사		(비공개)
(주)호진지리산보천	계열회사		(비공개)
PARISBAGUETTEBONDOUX,INC	계열회사		(비공개)
SPCFRANCE	계열회사		(비공개)
합계			(비공개)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우리 회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상품·용역명	가맹본부 제공 상품 일체(제품등 내역 홈페이지 및 POS 참고)
제한내용 및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상표권 보호,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및 가맹점 전체의 이미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2. 제한 내역<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담배 판매 금지② 음료 자판기 설치 금지 등③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해가되는 물품④ 가맹본부의 브랜드 또는 통일적 이미지를 해하는 물품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공급품 또는 가맹본부가 인정하는 품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격 외 제품
위반시 책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 제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o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책임 : 계약해지② 근거 :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서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판매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일정 기준에 따른 규격제품 외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규격 제품 사용 준수 의무

- (ㄱ) 규격 제품이란 가맹본부가 생산, 공급하는 제품이나 사전에 인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 (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사전에 인정한 제품 등을 구매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 보관, 진열, 판매하여야 합니다.
- (ㄷ)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공급품 또는 인정하는 수준의 물품을 매입하여 제품 판매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규격 제품 사용에 관한 점검

- (ㄱ) 가맹본부는 규격제품의 사용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점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ㄷ) 가맹본부는 점검결과 규격 외 제품사용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규격 외 제품 사용 시 제재 기준

구 분	제품 등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차수 적용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조치 사항	점주 지도 및 시정조치	휴면 반죽류 제품 공급중단 5일	휴면 반죽류 제품 공급중단 10일	계약해지	1년 (발생일로부터)
	모든 지원대상 제외	- 3개월	-	-	

* 제품 등의 공급기간 등 제재수준은 가맹본부가 경감할 수 있음.

*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④ 기타사항

- (ㄱ) 가맹본부는 제품규격서를 작성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규격제품 변경 사항 발생 등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POS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 (ㄴ) 이 외에도 가맹본부는 매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의 경우, 생산 당일에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규정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동법시행규칙 제53조) 따라 위반행위를 분류한 후 각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재한 별지의 식품위생관련금지행위 및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 (ㄷ) 귀하가 규격제품 외의 제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ㄹ) 우리 회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 (ㅁ) 가맹본부는 제품의 판매방법, 점포 제조 타입별(BM/OC/BC) 운영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뉴얼에 따라 점포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뉴얼을 위반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취급조건	차수	조치사항	적용기간
매뉴얼 미준수 (적발일 기준)	1회	시정요구	
	2회	해당제품 공급중단*	1개월

* 제품 등의 공급기간 등 제재수준은 가맹본부가 경감할 수 있음.

*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①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다만, 휴면 반죽류 및 원재료 자체의 판매와 가맹계약상 명기된 영업장소(가맹점포) 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맹본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소매가격(단기적 또는 예외적 판촉 세일 가격은 제외)을 고려하여 제품 등의 판매가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가격사항은 파리바게뜨 홈페이지(www.paris.co.kr)나 POS 가격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우리 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및 우리 회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리 회사 및 우리 회사의 계열회사의 영업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케익, 제과, 제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과제빵 영업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르뽀미에, 따삐오베이커리 베이커리팩토리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우리 회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17p. 가맹점입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개별 협의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경계선은 불포함)

3) 가맹계약 간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3,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단지,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 대형 쇼핑몰 기타 이에 준하는 상업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철길 또는 왕복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로 인하여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상호 협의 → 재조정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합의 및 합의서면 작성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간 영업지역 외 영업활동에 대하여 개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우리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계속)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직/가맹점	파스쿠찌	마카롱, 쿠키류, 빵류, 커피, 케익/파이류 등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직/가맹점	잠바주스	주스, 스무디, 커피류 등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직영점	리나스	샌드위치, 요거트, 우유, 커피, 완제/조제음료 등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직영점	퀸스파크	빵류, 쿠키류 등 베이커리 전반 커피/조제음료 등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직영점	Passion 5	빵류, 쿠키류 등 베이커리 전반 커피/조제음료 등	제품사양이 다름
직영점	파리크라상	마카롱, 쿠키류, 빵류, 커피, 케익/파이류 등	제품사양이 다름
직영점	OCS/ 커피앳웍스	커피류 등	세부업종/제품사양이 다름
FS(급식)	삼성웰스토리	완제빵, 선물류 등	단체 급식용 제품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푸드마스		
	CJ프레시웨이		
	푸디스트		
	신세계푸드		
SSM	동원홈푸드	HMR, 빵류 등	세부업종/제품사양 다름
	GS슈퍼		
	GS THE FRESH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대형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폐쇄몰	국군복지단 P.X	완제빵, 선물류 등	군납용 제품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아니거나 업체 전용 제품만 공급하는 경우 제외하였습니다.

* 기재된 채널에는 공급예정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실제 공급시점 및 방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모바일	(주)섹타나인	해피앱 어플리케이션	모바일교환권	모바일 유통채널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① 온라인 등 판매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딜리버리 서비스 등의 판매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발전하는 온라인 컨텐츠 문화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프라인의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온라인 판매나 딜리버리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규정은 적용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직접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개별 가맹점과 별도 약정에 따라 고객에 대한 배달이나 고객의 픽업에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가맹점에 지급합니다.

온라인쇼핑몰은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 내 해피마켓 및 타사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자동판매기 판매

당사는 대학교 등 상권의 특성에 따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판매기의 관리 및 운영은 당사 또는 인근 가맹점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영업지역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알려드리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그 가맹점사업자와 운영방식 및 주체 등을 합의합니다.

③ 기타 특납 등 판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수요처에 특납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원칙적으로 위 수요처가 당사의 영업표지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소속 임직원, 재학생 등에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 상품을 유통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4	96	4	0	0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4	0	0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직영점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어 위 비중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 중 점포를 리뉴얼(단, 부분리뉴얼 제외), 이전, 확장 등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에서 3년이 연장됩니다.

위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귀하의 영업관련 활동을 계약갱신 여부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우리 회사는 필요한 경우 가맹계약 갱신에 관하여 소정의 심의절차를 진행하여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우리 회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1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서비스 점검 및 경영상태 점검 결과 갱신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41조, 제23조, 제23조의2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41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기타 그 밖에 귀하가 가맹사업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① 우리 회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42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환경개선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
○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해당 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
○ 가맹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우리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가맹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기타 가맹계약의 중요사항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우리 회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2조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별지 Ⅲ]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노동관계법령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제18조의 2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즉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

② 귀하가 우리 회사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2조
○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 천재지변,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제42조
○ 가맹본부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불이행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우리 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 재조정 완료 및 적용	POS 시스템 상의 동의 또는 서면 작성 * 동의나 공지 여부 및 서면 작성 등 조정방법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음.

변경안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계약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안이 관계법령 기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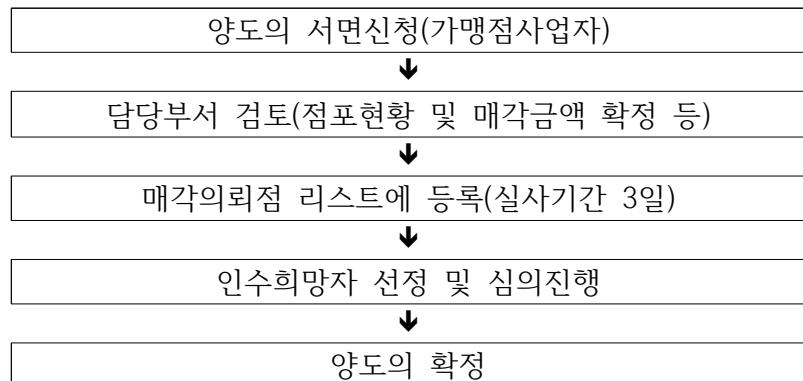
우리 회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아래 환매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의 운영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우리 회사는 귀하에 대하여 ‘점포개시를 위하여 지출한 초기 인테리어를 5년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우리 회사 또는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 가맹본부가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것을 가맹점사업자가 인수한 점포 - 가맹본부가 당초 직영점 개설을 목적으로 확보하였던 점포 - 가맹본부가 임대차.인테리어.장비설치 계약 등을 직접 체결 하였던 점포 -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	환매 신청 ▼ 가치평가 (감가상각 고려) ▼ 환매확정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우리 회사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하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우리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우리 회사의 서면승인이 있어야 만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금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가구,

장비 등은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5년 정액법에 따른 잔존가치로 평가하되, 양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제3자인 평가기관의 공인 평가결과를 같이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감정평가료 등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의 확정전, 양도인은 가맹본부와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물품대금의 미수금, 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잔여금액 등)가 정산되어야 하며, 만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도의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도가 확정된 점포에 대해서는 확정시점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만 주문/공급이 이루어짐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가맹본부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양수인은 개점비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우리 회사는 양수인과 신규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선택에 따라 신규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수인은 개점비 지급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로부터 신규반품지원, 인력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양수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갱신거절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② 양수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이에 준하는 사유에는 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포함됩니다)
- ③ 양수인에게 계약 해지 사유가 있거나 양수인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양수인의 가맹사업 관련 의무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양수인이 동종의 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⑤ 양수인이 파리바게뜨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⑥ 기타 양수인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우리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동안 가맹점 내에 상주하면서 직접 가맹점의 제반사항을 처리하고 가맹본부와 연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 및 승계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기 [2)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의 내용 중 가맹본부가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양수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승인은 거절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 승인 거절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서면통지 상기 사유 참고	모든 권리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우리 회사 승인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우리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국내에서 [파리바게뜨]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우리 회사는 [파리바게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 ~ 23:00 (16시간)	365일(연중무휴)	문의: 담당 사업팀 (가맹지역본부 일반정보 참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사업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우리 회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포사정에 의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근무	인력 대체	비고
일반형 4~10명	O	O	일판매가 150만원 : 상시근로자 4명이상 (인원 수는 매출 등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
카페형 5~15명	O	O	일판매가 200만원 : 상시근로자 5명이상 (인원 수는 매출 등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과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Q(Quality : 품질), F (Fresh : 신선도) I(Item : 제품구색), C(Cleanness : 청결, 위생), S(Service : 서비스) 및 5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등에 관한 정기 및 수시점검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점포 위생, 청결 등의 점검을 위하여 불시점검으로 진행됩니다.

- (n) 가맹본부는 Q,F,I,C,S 및 5S와 관련하여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제품 등 견본 징구 요구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
- (o) 우리 회사는 위 점검 결과에 따라 생크림 제조의 권리 및 판매장려금 등의 인센티브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내.외부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위생관리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③ 위 점포위생관리의 항목 및 용역 위탁시 비용.분담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역	도급단가(1회) (월/VAT포함)	작업 비용(월/VAT포함)		작업 주기	비고
			본사지원	가맹점부담		
점검	제과 설비	33,000	14,850	18,150	1회/월	
청소	간판 청소	63,800	11,000	52,800	2회/년	
	어닝 청소	143,000	-	143,000	2회/년	추가 어닝 7만7천원/개
	유리창 청소	88,000	-	88,000	2회/년	
	쇼케이스 청소	77,000	-	77,000	2회/년	
방역	구서.살충작업	22,000	2,200	19,800	1회/월	
	포충등(코브라)	25,300	-	25,300	1회/월	
	포충등(피닉스)	30,800	-	30,800	1회/월	

※ 용역비용은 최저임금고시 및 물가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사업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 및 방역 진행은 신청 점포에 한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점포위생 종합관리작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협의 하에 점포위생 종합관리작업의 내용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용역비용은 월별로 청구되고, 가맹점사업자는 위생관리업체의 작업월이 점포위생 종합관리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작업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부분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는 위생관리업체에게 익월 15일 이내에 가맹계약서상 약정된 비용을 지급 합니다.

④ 그 외에도 가맹본부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점포 내/외부의 노후, 손상된 부분의 개/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간판, 내부조명, 진열대(쇼케이스 포함) 등 브랜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개/보수 요청과 제조, 보관, 진열, 판매, 기타장비 등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교체, 수리 요청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또는 일정 지역(시, 군, 구) 내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비용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기업 광고와 제품 등의 광고 등을 총괄하고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지역에서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광고비용은 가맹본부 및 그 지역 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가 안분하여 부담합니다.

② 판촉비용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판촉행사 및 상품교환권, 무료구매권, 할인권 등에 대한 판매.사용 등의 행사기간 및 유효기간.금액 등 주요사항을 명시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촉행사와 관련한 비용부담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합니다.

판촉행사는 분담절차에 따라 동의한 점포에 대하여만 시행합니다. 다만,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에 대해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당시에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행사가 있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영업방침으로 별도 안내 후 적용됩니다.

100% 반품행사와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분담비용이 전혀 없거나, 물품형 상품권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권장가로 전액 정산하는 경우에는 별도 분담절차 없이 사전 공지후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광고	상품 및 브랜드 등 광고	- 사전 공지 비율에 따라 분담. - 사전 공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부담.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계획 공고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으로 시행.	
판촉	HPC운영	적립액의 50%	적립액의 50%	- 별도 절차 없음 (대금청구서 반영-5일단위 정산)	상시 운영
판촉	판촉물행사 (판촉비용*)	- 사전 공지 비율에 따라 분담. - 비율이 사전공지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비율로 안분.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주문취합 또는 주문시 자동반영
	할인/쿠폰 행사 (할인금액)				
	증정행사 (적용상품 출하가)	- 사전 공지 비율에 따라 분담.			
	제휴행사 (발생수수료)	- 비율이 사전공지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비율로 안분.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기타 개별 행사				월별 판촉 행사
	100% 반품행사	- 가맹본부 100%반품.		행사계획 공고 → 행사 시행	
	물품형 상품권	- 권장가 전액 정산.			

* 판촉비용이란, 판촉물행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판촉물제작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판촉물을 구입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기까지 소요한 모든 비용으로서, 판촉물의 구입대금, 보관비, 관리비, 운반비 및 기타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를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 회사는 해피포인트 카드 제도(H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피포인트카드를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는 적립금의 50%와 카드비용의 50% 및 통신비용을 부담하며, 가맹본부는 적립금의 50%, 해피포인트카드의 시스템제반 운영비용(시스템 운영비용, 카드비용의 50%, 신청서 제작 및 입력비용, 080 서비스 운영비용, VAN 사용료 등)을 부담합니다.

※ 자세한 해피포인트카드 제도에 대한 내용은 관련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각종 제휴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지적인 광고 및 판촉행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계획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 상호간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담긴 자료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누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에 속한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개인정보의 활용 및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및 체결 이후의 점포관리, 판촉/홍보 등의 영업활동에 활용하거나,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우리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 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 제공	45일 내외	
희망 상권검토	가맹점사업자 희망상권 내 입점검토	D-45	
점포 위치 선정	점포출점 예상 위치 결정(방문 및 FAX)	D-44~43	
점포 시장 조사	가맹본부 시장조사자료 교부/ 및 가맹점사업자 실사 검증		
점포개설 의사확정	시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실사검증 후 점포 개설 여부 확정		
개설심의	심의결과 개설이 거절될 수 있음		
개설일정 협의 및 가맹계약 체결	개점비, 가맹계약보증금, 디자인 설계 매뉴얼 비, 교육비 입금, 인테리어, 인·허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계약체결	D-30	13p. 이하
점포 LAY-OUT	영업, 오픈지원, 설비 승인 후 확정	D-23일 전	
점포 시공 계약	시공업체 견적 제시 및 업체 선정 인테리어 등 계약 체결	D-27~25(3일)	
점주 교육	영업교육, 제조교육	D-24(5일)	
오픈 진행 협의	오픈 홍보, 준비, 이벤트 협의/결정	D-24~5(20일)	
BM 용역 계약	제조 용역업체 면담 및 계약 기타(에어컨 장비증설 외)	D-7~4(3일)	
오픈 전 최종 점검	판촉사원 투입 오픈지원 및 운영실습교육 실시 인테리어 잔금/오픈비용/장비대 입금	D-2	13p. 이하
점포 오픈	점포 운영 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개별 점포 상황에 따라 그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 체결은 귀하의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우리 회사 전자가맹계약시스템(<http://franchise.spc.co.kr>)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귀하는 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분쟁발생시 원만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외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위 절차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 02-2276-6079)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우리 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VI 환경개선 제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개점행사	판촉인원 파견 /시식물품	신규점, 양도양수점 (신규조건) 리뉴얼점	오픈전일 ~ 7일 내	시식장려금 1,320천 원	
판촉장려금	판촉행사별 내용에 따라 상이함.				
반품지원	-	① 실물반품 기준(원칙) * 실물이란 출하상태와 동일한 상태를 뜻함 ② 교육이수	지속	① 제도반품(상시반품) : 가맹본부가 지정한 품목을 공급금액의 80%로 실물반품 ② 정기반품 : 신규, 양도양수점 1개월 (신규조건) ③ 행사반품 : 사업팀별 하절기 0.35%, /동절기 0.2% ④ 이벤트반품 : 품목별 주문량 10% 내 100% / 10% 초과 50%	
마일리지 (해피 포인트)	HPC 앱고객대상 구매금액의 5%, 실물카드고객대상 구매금액의 0.5% 마일리지 적립	無	無	적립금액 본사 50% 지원	

- * 개점행사의 판촉인원 지원은 8시간/일 근무 기준이며, 초과 근무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는 판촉인원의 초과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해야 함.
- * 반품에 관한 정책은 POS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음.
- * 제도반품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품목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실물반품하는 제도로, 가맹본부는 이를

공급금액(공장도가)의 80%로 인정함.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가 신규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점 후 1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개점 1개월 경과 후 가맹점사업자가 신규점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가능함)

- * 정기반품은 신규/명의변경(신규조건)점에만 적용되고, 신규점주교육과정 수료조건임.
- * 반품은 수량, 상태, 외형 등이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의 “실물”임이 원칙이고, 만일 수량 부족, 품목불일치(이상 “부적합 반품”이라 함) 등이 발생할 경우 당해 반품을 거절할 수 있음.
- * 허위반품처리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반품 거절조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다만, 1개월간 실물 반품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익월부터 본 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조건	차수	조치사항	적용기간	비고
부적합 반품	1회	시정요구		사안에 따라 경감가능
	2회	본조에 따른 반품 중단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은 가능)	30일	
	3회 이상	본조에 따른 반품 중단 및 계약 갱신 거절		

3. 점포 제조업무 지원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지원조건은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내용 외에 점포 제조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BM 등을 고용하거나 제조용역 공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경영활동 자문

우리 회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정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회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점포방문/ 집체교육 등	사안별 상이	
비정기	상동	상동	상동	
비정기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동	상동	

5. 신용 제공 등 내역

우리 회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가맹점 입문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마인드와 윤리 ● 파리바게뜨 시스템 이해 ● POS시스템 이해(매출등록, Web주문) ● 점포 위생관리 ● 제휴마케팅 및 해피포인트카드 이해 ● 직원 커뮤니케이션 및 균로기준법 이해 ● 서비스 마인드 및 고객응대 표준 ● 불만고객 응대 ● 제품포장 및 진열 ● 파바딜리버리 등 	집단강의 또는 온라인 실습교육	점포오픈 전	필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면반죽이론 및 실습 ● 음료 제조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 청소법 - 커피류, 비 커피류 제조 실습 ● 샌드위치 제조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샌드위치 제조 / 포장법 습득 - 원재료 취급 방법 / 위생 관리 	집단강의 실습교육		
신규점 보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랜솔 온라인(모바일)학습 3과정 	온라인 (모바일)	오픈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필수 교육
가맹점서비스 보수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환경/위생관리 ● 고객응대 표준 ● 불만고객 응대 	집단강의 또는 온라인	교육 해당일 이내	필수 교육
위생클리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 맞춤형 위생 컨설팅 ● 위생관리 실습 활동 ● 위생관리 우수사례 소개 ● 위생 등급제 사전진단 	방문교육 (대면교육)	오픈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수 교육
가맹계약갱신 보수과정 (3,10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운영력 향상과정 ● 경영자마인드 관련 외 	집단강의 또는 온라인	최초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필수 교육
OC/BC 탑입 가맹점 생산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면반죽 공정이해 및 성형기본(20~60종) ● 주요 취급품목 중심 생산 실습 	집단강의 또는 현장 인수인계	OC/BC 탑입 전환 전까지	OC/BC 운영점 필수

* 교육수료는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수강하고 TEST 80점 이상이어야 함.

* 보수교육은 오픈 후 온라인(모바일)방식으로 학습지원함.

* 장기운영점포(10년이상 운영이력 有)의 경우 제조실습, 위생클리닉 교육은 선택사항입니다.

* 교육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1) 신규가맹점 입문과정 교육 입과 인원 및 비용 기준

구분	신규점주		추가 인원 입과시	
	기준인원	교육비 (단위:천원,VAT별도)	추가인원	교육비 (단위:천원,VAT포함)
신규가맹점 입문과정	2명	2,500	1명	1,375
위생클리닉	-	400	-	-
OC,BC 교육	2명	2,500		

* 점포오픈 전 1명 이상 필수 입과

* 기준 인원보다 추가 입과 시 입과인원 1명당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 추가

* OC,BC 교육의 경우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비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사전 안내 후 교육 진행예정

2) 교육비 환불 기준

상기 금액은 가맹점희망자가 신규가맹점 입문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도에 교육을 중단, 중지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교육비용에 대하여 전체 교육일 중 이수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 지급된 유니폼/교재 등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 별도)	비고
신규가맹점 입문과정	70시간	2,500	최초 계약시 이수
신규가맹점 보수과정	2시간	-	온라인/모바일
가맹점서비스 보수과정	3시간	-	당사지원
파리바게뜨 프랜솔	-	-	당사지원
위생클리닉	3시간	400	방문교육
OC/BC 탑업 생산교육	4주	2,500	집단강의 또는 현장 인수인계
계약갱신 보수과정(3,10년차)	1시간	-	집단강의 또는 온라인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그 종업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과정	불이익내용		비고
신규가맹점 입문과정		가맹점 오픈 불가 (단, 입과 제외 대상은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과 제외 대상 : 신규가맹점 입문과정 수료 이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단 점포 실운영을 유지한 경우)
신규점 보수과정		제도반품 적용 제외	
가 맹 점 서 비 스 보 수 과 정	교육 미 참 석 점	1회	케익시트 출하중단 1주일
		2회	반품적용 제외 2주일
		3회	반품적용 제외 1개월
		4회	반품적용 제외 2개월
	2년 연속 D등급 또는 교육불참석	재계약불가	계약 종료 시점 재계약 불가
계약갱신 보수교육		[별지 V]의 경영상태점검시 반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시기(정기/수시), 방법 등 관련사항은 POS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음 2) 가맹계약 갱신 전에 수료하여야 함 3) 교육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공지함

* 교육관련 변동사항이나 새로운 과정의 신설 등은 POS등을 통해 별도 고지함.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양재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27 영진빌딩
2	서울	선릉 아이타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번지 1층
3	강원	PB횡계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65-32
4	서울	강남서초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1 (서초동)
5	경기	가평휴게소하행선점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540번길51 가평(춘천방향)휴게소 1층
6	경기	랩오브파리바게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백현동) 1층
7	경기	가평휴게소상행선점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544 가평(서울방향)휴게소 1층
8	경기	베이킹랩파리바게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용대로 924 (수원AK프라자) 지하1층
9	인천	인천공항에어랩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10	인천	인천공항에어사이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에어사이드 파리바게뜨 에이사이드점
11	인천	인천공항탑승동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3층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파리바게뜨 탑승동점
12	인천	인천공항 가든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일반동 3층
13	서울	카페신사(PB)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03
14	서울	카페수유역(PB)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37
15	경기	PB광명역사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1층 파리바게뜨
16	서울	한양대학교병원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사근동) 신한플라자(동관)1층
17	서울	PB김포공항 국제선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국제선청사 2층
18	제주	제주공항점	제주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용담이동, 제주국제공항 3층)
19	제주	제주공항 렌트카하우스	제주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
20	제주	제주공항탑승	제주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국내선 격리대합실 2층
21	제주	제주동화마을	제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1193, 1층
22	서울	이태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6
23	경기	삼성SD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 2층 파리바게뜨
24	부산	PB부산덕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6 파리바게뜨 부산덕천점
25	부산	해운대장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14 124,125호 (세종월드프라자)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6년 4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134,812	POS매출액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http://franchise.spc.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 지 목 차

- 1.【별지 I】 재무상태표
- 2.【별지 II】 손익계산서
- 3.【별지 III】 식품위생법 위반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품 등”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 4.【별지 IV】 서비스 평가 기준
- 5.【별지 V】 가맹점 경영상태 점검
- 6.【별지 VI】 점포환경개선
- 7.【별지 VII】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8.【별지 VIII】 필수품목 및 권장품목

【별지 I】 재무상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II】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III】 식품위생법 위반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제품 등” 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IV】서비스기준 미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조치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 가맹점 경영상태 점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I】점포환경개선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II】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지 VIII】 필수품목 및 권장품목

1. 구입강제품목 (필수품목) 2025년 3월 31일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구입권장품목 2025년 3월 31일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